금융위원회고시 제 호

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6제2호나목 중 “16.5”를 “8.5”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“20”을 “12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중금리대출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6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취급하는 대출등에 대해서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6(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기준) 시행령 제16조의2제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말한다.	제4조의6(비조합원대출한도 우대기준) -----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분기 단위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에 대한 신용대출상품의 해당분기 대출. 다만, 종료되지 않은 분기 중에 취급한 대출의 경우 해당 분기 종료까지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.	2. ----------.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가중평균금리가 100분의 16.5 이하인 경우	나. ---------- 8.5 ----------
다. 최고금리가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	다. ---------- 12 ----------
라. (생 략)	라. (현행과 같음)